

자산 · 부채 실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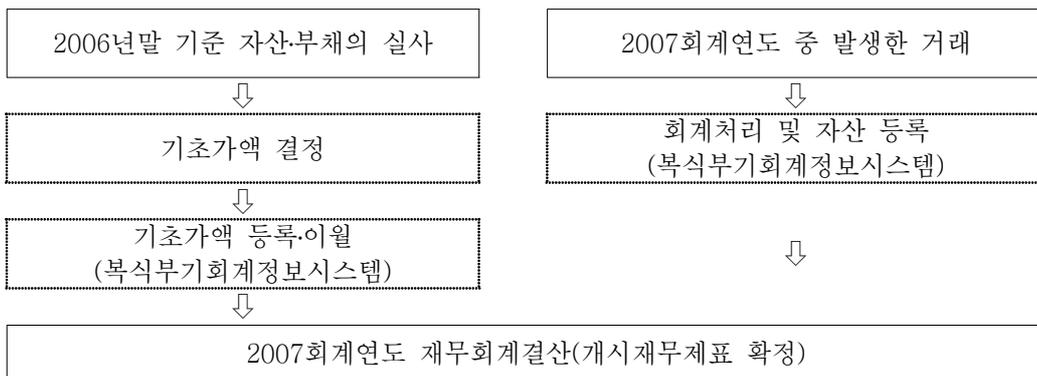
2. 자산·부채 실사 결과분석

(1) 자산·부채 실사의 의의

1) 자산·부채 실사의 개념

- 자산과 부채의 실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가치가 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조사하는 과정
 -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산·부채의 기초가액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해당
 - 자치단체는 정확한 실사를 위해 1차 및 2차 실사를 수행하고 실제 실사를 담당할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부서 연찬회 등을 통해 실사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 ※ 지방자치단체는 '06. 12. 31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의 기초가액을 확정하여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고, '07.1.1.~ 12.31 기간의 회계처리 자료를 포함하여 '07회계연도 개시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야 함

<그림 1> 자산·부채실사 및 개시재무제표의 작성과정



2) 자산실사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산·부채의 기초가액 결정을 위한 실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첫째, 자산실사 대상 자산의 실재성 확인으로 실제로 해당 자산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중요함
- 둘째, 실사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부채 기초가액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최초 적용연도인 '07년 개시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2) 자산·부채의 실사 원칙 및 실사방법

1) 실사 원칙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기초자산 및 기초부채의 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산 및 부채 실사 조사 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 조사는 자산과 부채의 실제 보유수량 및 현황을 현물로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 등록증 등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 자산·부채 조사과정에서 확인 점검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복식부기 적용시점 이전 발생 자산·부채의 인식
 - 보유자산에 대한 완전한 현황 파악이 필요
 - 공유재산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 채권·채무관리대장을 통한 현황파악
 - 누락된 자산·부채의 현황 파악
 - 보유자산의 가액 결정
 - 가격에 대한 증빙을 통해 결정(증빙이 없는 경우 추정의 방법을 사용)
 - 취득원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평가방법 사용(예: 현행대체원가법, 역사적 취득원가 추정 등)
- 자산 및 부채 유형별 실사 관련 주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재고자산 등 실물이 있는 경우 실재성 확인 절차를 거치고 기존의 기록(결산자료, 공유재산

대장, 물품대장 등 기록 유형 예시)상 가액을 기초재정상태보고서상 금액으로 하고 미수세금, 단기대여금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록(결산자료, 공유재산 대장, 물품대장 등 기록 유형 예시)을 점검하고 해당 가액을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금액으로 사용

- 유동부채의 경우 기존의 기록(계약서 등)을 점검하고 해당 가액을 기초재정상태보고서상 금액으로 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에 대해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관점에서 취득시점 및 준공시점이 실사기준일 이전인 자산은 실사에 포함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도시철도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은 별도의 실사 없이 실사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별 결산서의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적용

2) 실사방법

-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록이 미비한 자산에 대해서는 실시조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자산·부채의 실사방법 비교

조사방법	주요 내용
실지조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조사서식에 따라 각 실과소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부채 내역을 조사, 취합하는 방법임 ·세부적인 내역반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절차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고 특히 일선 실과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시설자산(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의 실사에서 주로 활용
서면조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결산자료, 자산관리자료 등을 통해 각 실과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내역을 조사하는 방법 ·보유 자료를 활용하므로 실과소에 업무부담을 적게 주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 변환을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시설자산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부채의 실사에서 주로 활용

- 필수기재사항과 보충적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은 제시된 자산·부채의 실사 서식 내용 중 개시재무제표작성 목적으로 또는 기본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작성기한 내 반드시 조사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가급적 정확성을 추구하여야 함

- 보충적 기재사항은 제시된 자산·부채의 실사 서식 내용 중 개시재무제표 작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나 해당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
- 보충적 기재사항에 속하는 항목이라도 필수기재사항에 속한 항목의 산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필수기재사항 항목과 동시에 작성할 필요가 있음

(3) 자산·부채의 가치평가

1) 평가기준

- 자산평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거취득 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취득원가 확인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포함)에는 표준적인 대체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전 지자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제도도입 초기의 업무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 대체평가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취득원가 기준으로부터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설정하고, 그룹화 가능한 동일유형 자산의 경우 취득시기와 규격 등을 고려하여 종합(그룹으로)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2) 평가기준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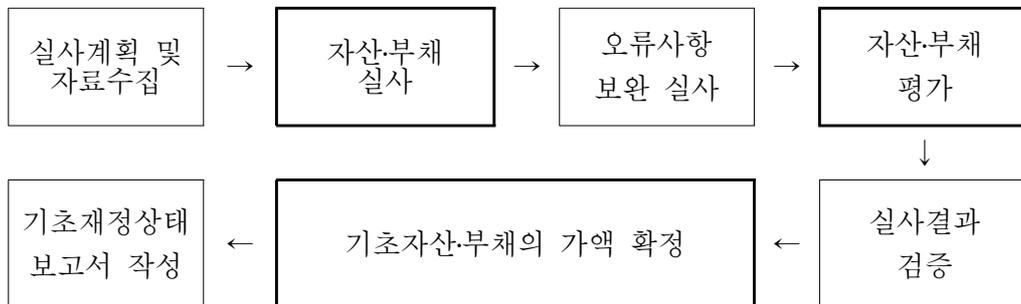
- 취득원가와 대체평가방법 적용자산의 구분
- 자산평가의 원칙은 취득원가 기준이므로 취득원가의 파악이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평가. 다만, 토지와 입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 전부 대체평가방법을 적용
- 공문서 보관기간이 5년이므로 취득 5년 이내의 자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취득원가를 파악
-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에 한하여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과거 5년 이내에 취득되었으며 취득원가의 확인이 가능한 자산(토지, 입목 제외)은 반드시 취득원가로 평가
- 실사대상자산의 범위
- 원칙적으로 실사대상자산은 예산의 지출을 통해 취득한 자산으로서 자산

화 기준(비용처리 할 수 없는 금액, 현재 10만원)에 부합하는 자산은 전부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

(4) 자산·부채의 실사 과정

- 자산·부채실사는 그동안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업무로 최대한 빠짐없이 실효성 있게 기초자산·부채의 가액이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자산실사 추진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자산·부채의 실사과정



1) 사전준비 및 자료수집 단계

-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업무추진사항 및 자산실사 요령을 습득
 -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고 복식부기 실무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협조, 의사소통 등 사전준비 철저

- 0 복식부기 전담팀 교육
 - 교육 중 선행기관 벤치마킹(선행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등)
- 0 실무자 교육이수 후 자산·부채 실사를 위한 담당자 교육
 - 대상 : 실·과·소 담당별 1명, 읍·면별 회계담당자 1명
 - 내용 : 자산 관리부서 실사를 원칙으로 함(1차조사 : 유형자산, 2차조사 : 기타비유동, 투자자산조사)
- 0 관련부서 및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통한 업무연찬(자산실사부분 13회 게시)
 - 담당자와의 1:1 전화통화로 자산실사 업무연찬
 - 실·과·소를 방문하여 복식부기회계 제도 홍보
 - 전자문서 게시판을 통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홍보 및 변경된 지침 및 회계처리 게시

- 자료수집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산·부채 실사 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단계이며, 자산·부채에 대한 일반 현황을 비롯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항목에 관한 세부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함

<표 2> 자치단체 자산·부채 실사관련 조직부서

실·국	관련부서	건수(건)	금액(백만원)	자산 유형
감사담당관		81	131	일반유형자산
행정관리국	총 무 과	208	89,561	청사건물, 토지, 분수대, 문화정보센터, 예술회관, 청소년문화원 등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주민자치과	76	104,849	
	문화체육과	154	4,889	
	민원봉사과	122	402	
	재난안전관리과	55	7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53	3,695	유동자산 토지 등 일반유형자산
	재 무 과	72	87	
	징 수 과	66	87	
	부 과 과	76	244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202	39,047	쓰레기봉투, 환경미화원휴게실, 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가정복지과	117	13,820	
	산업환경과	146	602	
	청소행정과	284	16,168	
도시관리국	주 택 과	92	135	공원, 운동장, 가로수 녹지조성, 주거환경개선지구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 시설
	도시정비과	114	227	
	건 축 과	231	85	
	지 적 과	83	233	
	공원녹지과	9,849	22,636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2,756	583,832	저전거보관소, 주차장, 주차장 CCTV, 도로, 교량, 보안등, 가로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토목하수과	84	560	
	교통행정과	394	962	
	교통지도과	149	18,785	
보건소	보건행정과	96	7,919	보건소, 건강센터 등 일반유형자 산
	보건위생과	107	122	
	의 약 과	275	883	
	지역보건과	301	447	
의회	의회사무국	260	562	의회청사 등 일반유형자산
동	동사무소	1,527	1,983	일반유형자산

- 자산실사 자료 수합 전 통계연보 및 기타자료를 통하여 기본자료 수집
- 토지실사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
 -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자산에 대하여 그대로 수합할 시 누락자산을 파악할 수 없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
 - 지적담당 부분의 지적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 자산을 담당자가 관리하면서 실과소 자료 및 공유재산 자료를 통하여 세부적 실사를 실시

2) 자산실사 자료수합 및 보완실사

- 다음으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공부 자료와 대조하여 누락자산 발굴 및 실사 평가된 내용 중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등 보완실사를 실시함.
 - 실·과·소의 자료를 수합하여 자산 유형, 취득가액 및 자산실사 서식에 맞게 자료를 일치시키고, 교육시 강조한 사항(날짜형식, 금액단위)에 대해서도 일부 상이하게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정리함
 - 특히, 통계연보 및 기타 통계자료를 통하여 누락자산이 발견될 시 재조사를 요청함

3) 자산·부채의 기초가액 확정

- 자산·부채 실사 평가에 대해 자문기관,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검토, 자문을 받고 실사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 후, 자산·부채의 기초가액을 확정하고 이를 개시재무제표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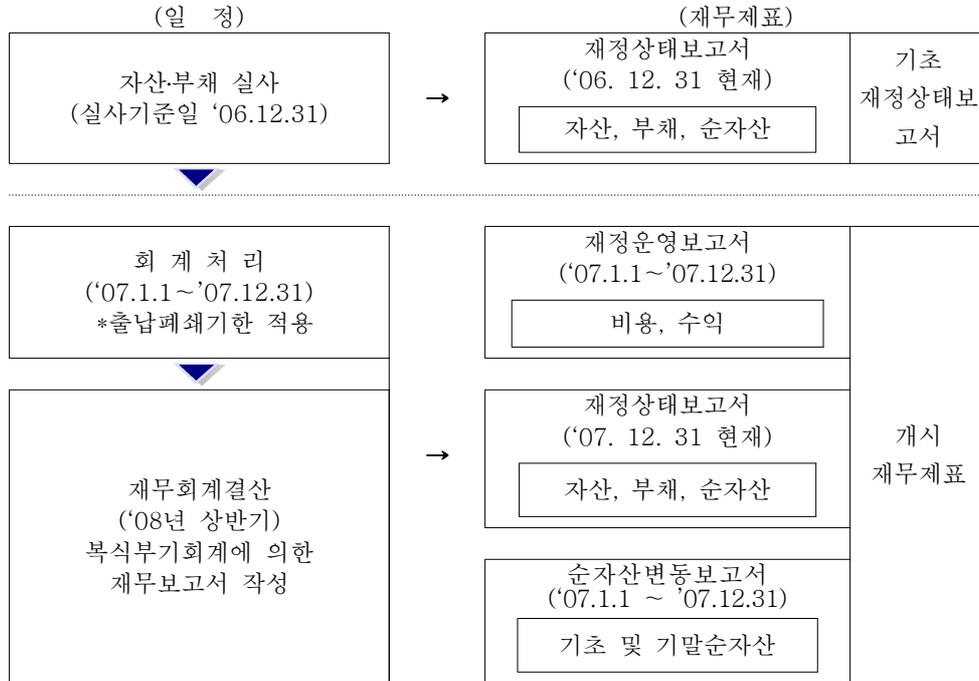
(5)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실사 추진과정

-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생성하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기한은 2007. 12. 31까지임
- 기존 시범운영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된 실사자료를 검증하고 추가적 실사작업을 통해 실사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확산 보급되는 시범운영기관은 '07년말 까지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실사작업을 수행함
 - 자산 및 부채의 실사기준일 : 2006. 12. 31
 -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액 확정
 - 실사대상자산과 부채의 현황파악 : 2007. 7. 1 까지
 - 실사대상자산의 평가 : 2007. 12. 31 까지
- 그리고 기초재정상태보고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연도('07년)의 재무제표(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전연도말 현재의 자산·부채와 순자산의 금액(계정과

목 각각의 금액)을 장부상 금액이 아닌 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여 작성한 재정상태보고서임

□ 자산실사부터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 자산·부채실사와 개시재무제표의 연계



※ 국가회계의 자산실사 추진현황

- 개시재무제표 시험작성('03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개시재무제표를 시험작성) 등 기본준비사항 완료 : '04. 12. 24
- 개시재무제표 시험 작성은 '03년말 정부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산·부채를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작성한 것임.
- 작성방식은 현행 국유재산, 물품, 채권 및 채무별 정부결산자료를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자산, 부채로 구분하여 작성

<개시재무제표 시험작성 결과> : '03년 말 기준
 - 자산 377조(유동자산 130조, 투자자산 132조, 유무형자산 115조)
 - 부채 158조(유동부채 20조, 장기부채 138조)
 - 순자산 219조
 - 유동비율 650%, 부채비율 72%

-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방안을 '06. 7월까지 작성하고 구체적인 실사지침을 마련하고 '06년 말까지 교육 실시

- '06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부채 1차 실시('07년 초) 후, 동 결과를 토대로 외 부기관에서 2차 실시('08년 초)
- '08년 : '07년 결산기준 개시재무제표 확정, 전 부처 본격 시행 예정

(6) 국가회계의 자산실사 결과 검토

1) 국유재산결산서와 결산재무제표와의 차이 비교

- 국유재산 항목은 관련 계정과목과 대응이 1:1인 항목을 추출하여 상호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연부연납, 탄소관회계 자산의 처분 및 부분매각 등과 같이 양자의 계상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여 차이가 발생함. 또한, 유가증권과 무체재산은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05년 10월 이후 시점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전 거래의 단식과 복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 물품결산서와 결산재무제표와의 차이 비교

- 물품종목별로 계정과목이 여러 개로 대응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소관회계별로 단식결산서의 기말잔액 합계와 관련계정과목과의 기말잔액합계의 차이가 없으므로 상호 연계가 적정함. 즉,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하여 단식결산을 수행한 소관회계의 경우 재무제표는 감가상각누계액과 취득가액이 분리하여 공시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관회계별 단식결산서 기말잔액 합계와 관련계정과목과의 기말잔액 합계의 차이가 없으므로 상호 연계가 적정함

3) 국가채권결산서와 결산재무제표와의 차이 비교

- 채권결산서와 재무제표 계정과목은 중대한 오류 없이 연계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단식결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재무제표와 차이가 존재함. 채권결산서 금액과 재무제표 금액의 차이의 중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연계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대한 오류 없이 연계가 되고 있음
 - 채권종류에 대응되는 단식결산상 금액과 계정과목상 금액은 단식결산 금액이 조회시점마다 차이를 보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차이비율이 미미하여 단식결산상 금액이 재무제표로 중요성 관점에서 오류 또는 누락 없이 연계되고 있음
- 일부기관의 경우 NAFIS 시스템을 통하여 단식 결산을 수행하지 아니하

고 자체적으로 결산을 수행하여 NAFIS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와 단식결산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7) 자치단체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분석

□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07년 2/4분기 까지 완료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분석 내용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산의 종류별 비중, 주요한 자산의 분포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함

- 분석 대상단체는 광역단체(시·도) : 3개 단체, 기초단체 시·군 : 8개 단체, 기초단체 자치구 : 14개 단체 등 총25개 단체임

1) 자산·부채의 종류별 비중 :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 사례분석 대상단체(25개) 총자산가액에 대한 각 자산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6.36%, 투자자산 5.11%, 일반유형자산 7.18%(토지 4.38%), 주민편의시설 10.96%(공원 4.68%), 사회기반시설 70.29%(도로 50.76%)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음

- 특히 도로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유동자산은 시·군이 높고(8.47%), 광역시·도가 낮게(4.68%) 나타남
- 일반유형자산은 자치구(11.09%), 시·군(6.90%), 광역시·도(6.01%)의 순임
- 주민편의시설은 자치구가(12.77%), 공원은 광역시·도(5.21%)가 가장 높음
- 사회기반시설은 시·군(73.35%)이, 도로는 자치구(61.96%)가 가장 높음

<표 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의 비중(평균)(단위 : %)

자산의 종류	광역시·도(3)	시·군(8)	자치구(14)	전체(25 단체)
유동자산	4.68	8.47	7.79	6.36
투자자산	8.63	1.47	0.79	5.11
일반유형자산 (中 토지)	6.01 (2.50)	6.90 (5.20)	11.09 (8.51)	7.18 (4.38)
주민편의시설 (中 공원)	11.04 (5.21)	9.74 (3.51)	12.77 (5.08)	10.96 (4.68)
사회기반시설 (中 도로)	69.52 (47.44)	73.35 (49.86)	67.45 (61.96)	70.29 (50.76)
기타비유동자산	0.08	0.07	0.16	0.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부채의 경우 전체적으로 총부채에서 접하는 비중은 장기차입부채가 77.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유동부채(18.08%), 기타비유동부채(4.11%)의 순임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광역시도와 시군은 장기차입부채가 높은 비중을 접하는 반면 자치구는 기타비유동부채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부채의 비중(평균) (단위 : %)

자산의 종류	광역시·도(3)	시·군(8)	자치구(14)	전체(25 단체)
유동부채	16.57	26.33	29.15	18.08
장기차입부채	83.07	62.16	6.75	77.81
기타비유동부채	0.36	11.51	64.10	4.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2) 자산·부채 실사 결과의 특성 분석

(1) 기초단체 시·군(8개)

- 총자산가액은 5.93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주민편의시설 7.03배(공원 : 87.72배), 사회기반시설 6.09배(도로 : 6.15배)의 차이를 보임
 - 주민편의시설(변이계수 0.8153) - 특히 공원(1.4608)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고, 총자산가액(0.6981), 사회기반시설(0.6733), 도로자산(0.6949) 등의 상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각 부채 종류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보면, 총부채는 34.08배, 유동부채 39.14배, 장기차입부채 45.78배, 기타비유동부채 8.81배로 나타남
- 시군간 편차는 변이계수에서 유동부채가 1.70444, 총부채 0.80473, 기타비유동부채 0.75090, 장기차입부채 0.68712로 유동부채와 총부채의 경우 상대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기초단체 자치구(14개)

- 총자산가액은 14.93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123.52배(도로 : 117.74배), 주민편의시설 11.96배(공원 : 124.20배)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주민편의시설의 공원자산(변이계수 0.91019)이 상대적인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사회기반시설(0.76430), 주민편의시설(0.73546), 도로자산(0.73520), 총자산가액(0.69136) 등의 상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각 부채 종류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장기차입부채 382.91배, 기타비유동부채 126.55배, 유동부채 27.80배 등으로 나타남
- 자치구간 편차를 변이계수에 의해 살펴보면, 유동부채(0.94011)와 장기차입부채(0.84000)가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3) 종합검토

- 자산의 경우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자치구가 시·군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및 도로자산에서도 자치구가 시·군에 비해 상대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남. 다만,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자산의 경우 시·군이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부채의 경우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자치구가 시·군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자치단체간의 상대적인 편차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유동부채가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자산실사 결과의 현황과 특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시·군 (8개)	총자산	1,175,013	6,968,682	2,899,301	2,023,876	0.69806
	주민편의시설	118,462	833,929	282,505	230,315	0.81526
	공원자산	5,195	455,729	101,856	148,788	1.46076
	사회기반시설	757,551	4,614,196	2,126,513	1,431,828	0.67332
	도로자산	464,750	2,858,647	1,445,480	1,004,410	0.69486
자치구 (14개)	총자산	153,218	2,288,441	992,306	686,043	0.69136
	주민편의시설	24,918	298,161	126,730	93,205	0.73546
	공원자산	1,447	179,720	50,458	45,926	0.91019
	사회기반시설	13,806	1,705,367	669,326	511,569	0.76430
	도로자산	11,925	1,404,088	614,796	451,996	0.73520

<표 6> 부채실사 결과의 현황과 특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시·군 (8개)	총부채	4,191	145,382	62,345	50,171	0.80473
	유동부채	2,174	85,089	16,416	27,980	1.70444
	장기차입부채	1,856	84,978	44,292	30,433	0.68712
	기타비유동부채	1,767	15,581	7,173	5,386	0.75090
자치구 (14개)	총부채	5,822	26,942	14,289	8,421	0.58934
	유동부채	492	13,681	4,485	4,217	0.94011
	장기차입부채	12	4,595	2,249	1,889	0.84000
	기타비유동부채	154	19,489	9,160	6,002	0.65526

3) 재무비율지표에 의한 자산 분포 현황

(1) 기초단체 시·군

-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유동비율(3,154.36%)을 제외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비율 25.49%, 총자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비율 17.49%, 부채비율은 4.1%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치단체간의 편차는 부채비율(변이계수 0.69721)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유동비율(0.369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비율(0.19439), 총자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비율(0.09659) 등의 분포를 보임

(2) 기초단체 자치구

-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유동비율(5,312.34%)을 제외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비율 68.70%, 총자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비율 67.89%, 부채비율은 6.43%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치단체간의 편차는 부채비율(변이계수 0.86268)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유동비율(0.618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비율(0.29677), 총자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비율(0.28996) 등의 분포를 보임
- 종합적으로 재무비율지표에 대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 및 자치단체간 상대적인 편차는 양자 모두 자치구가 시·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7>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 지표 현황 (단위 : %)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시·군 (8개)	사회기반시설/총자산	64.47	81.96	73.24	7.07	0.09659
	도로/사회기반시설	36.22	61.71	48.74	9.47	0.19439
	유동비율	887.88	4,042.24	2,660.15	982.75	0.36943
	부채비율	0.28	4.38	2.18	1.52	0.69721
자치구 (14개)	사회기반시설/총자산	9.01	76.90	61.27	17.76	0.28996
	도로/사회기반시설	7.78	76.48	57.17	16.97	0.29677
	유동비율	585.02	5,897.36	2,995.80	1,853.15	0.61858
	부채비율	0.96	7.39	2.00	1.73	0.86268

4) 자산가액과 현행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명), 행정구역면적(km²), 도로연장(km), 공원면적(천 m²)과 자산가액, 토지가액, 도로가액, 공원가액, 사회기반시설가액 등 간에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분석하여 자산실사 결과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산가액은 인구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0.92321)를 지니고 있으며, 도로와도 높은 상관관계(0.86770)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구수는 대표적인 수요변수로서 자산규모 및 도로연장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8> 피어슨 상관관계수(1)(N=25)

구분	인 구	면 적	도 로	공 원	자산가액
인 구	1.00000	0.54549 0.0048	0.93926 <.0001	0.52517 0.0070	0.92321 <.0001
면 적	0.54549 0.0048	1.00000	0.65136 0.0004	0.97868 <.0001	0.49051 0.0128
도 로	0.93926 <.0001	0.65136 0.0004	1.00000	0.61618 0.0010	0.86770 <.0001
공 원	0.52517 0.0070	0.97868 <.0001	0.61618 0.0010	1.00000	0.41571 0.0388
자산가액	0.92321 <.0001	0.49051 0.0128	0.86770 <.0001	0.41571 0.0388	1.00000

□ 인구, 면적 변수와 토지가액, 주민편의시설, 공원가액, 사회기반시설, 도로가액 등 자산의 구성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구수는 사회기반시설, 공원가액, 주민편의시설 등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행정구역면적은 도로가액, 사회기반시설과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가액, 주민편의시설, 공원가액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도로연장과 도로가액은 높은 상관관계(0.86076)를 보이고 있으나, 공원면적과 공원가액은 음(-)의 상관관계(-0.03429)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표 9> 피어슨 상관계수(2)(N=25)

구분	토지가액	주민편의시설	공원가액	사회기반시설	도로가액
인 구	0.58800 0.0020	0.72748 <.0001	0.69795 0.0001	0.87183 <.0001	0.90491 <.0001
면 적	0.20197 0.3330	0.09986 0.6348	0.00756 0.9714	0.53078 0.0068	0.59468 0.0017
도 로	0.61732 0.0010	0.70967 <.0001	0.65299 0.0004	0.80850 <.0001	0.86076 <.0001
공 원	0.13359 0.5244	0.05254 0.8030	-0.03429 0.8707	0.45492 0.0223	0.52736 0.0067
자산가액	0.56794 0.0031	0.69462 0.0001	0.66257 0.0003	0.97776 <.0001	0.97941 <.0001

□ 주민편의시설과 공원가액(0.99093), 사회기반시설과 도로가액(0.99233)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표 10> 피어슨 상관계수(3)(N=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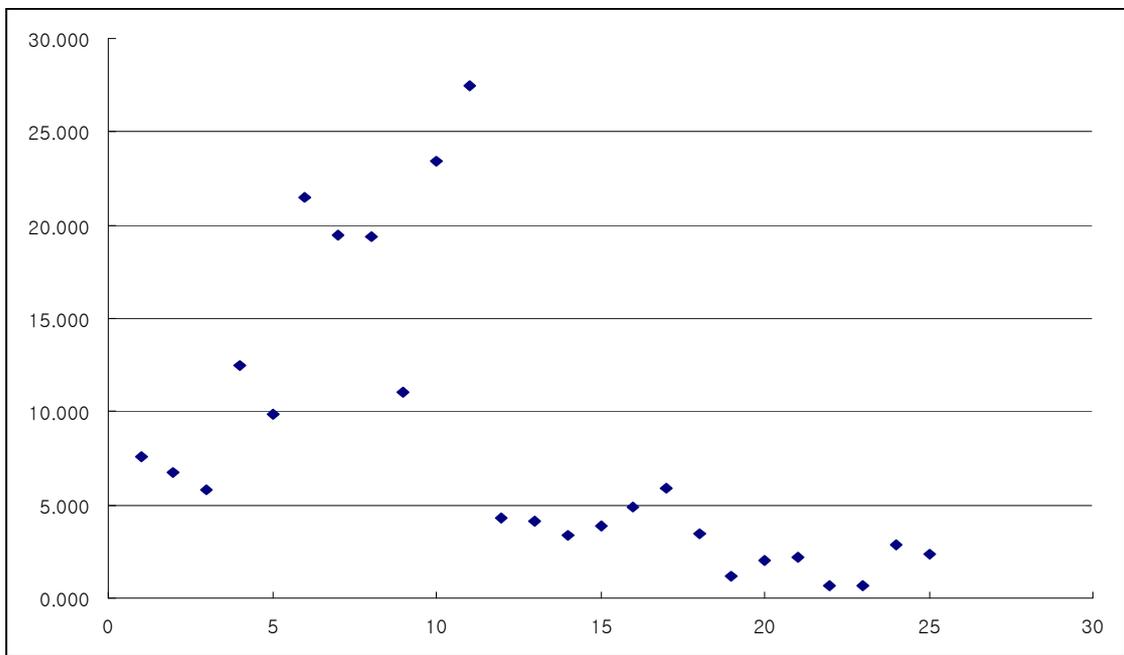
구분	토지가액	주민편의시설	공원가액	사회기반시설	도로가액
토지가액	1.00000	0.82217 <.0001	0.80785 <.0001	0.42140 0.0359	0.45734 0.0215
주민편의시설	0.82217 <.0001	1.00000	0.99093 <.0001	0.53022 0.0064	0.55704 0.0038
공원가액	0.80785 <.0001	0.99093 <.0001	1.00000	0.49631 0.0116	0.51633 0.0082
사회기반시설	0.42140 0.0359	0.53022 0.0064	0.49631 0.0116	1.00000	0.99233 <.0001
도로가액	0.45734 0.0215	0.55704 0.0038	0.51633 0.0082	0.99233 <.0001	1.00000

5) 자산·부채 관련 분포 현황

(1) 주민1인당 순자산의 분포 현황

- 시와 군은 대체로 12.5- 27.4 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광역 시도(5.8-7.5백만원), 자치구(0.6-5.8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주민1인당 순자산은 자치단체 간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1인당 순자산이 현격하게 작게 나타남

<그림 4> 주민1인당 순자산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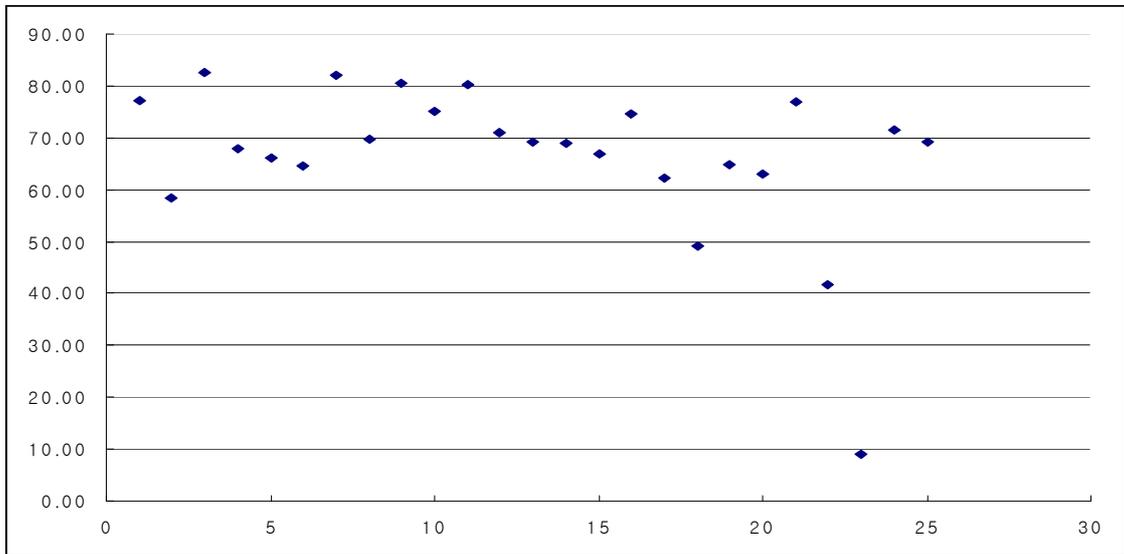


- 순자산의 경우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재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임
 - 따라서 전년대비 순자산증가율 또는 1인당 순자산의 변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경영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음

(2) 자산총액 대비 사회기반시설의 비중

- 총자산가액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의 비중은 최고 82.4%로부터 최저 41.7%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즉, 일부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이 총자산가액의 60.0% 이상을 차지하는 분포 상황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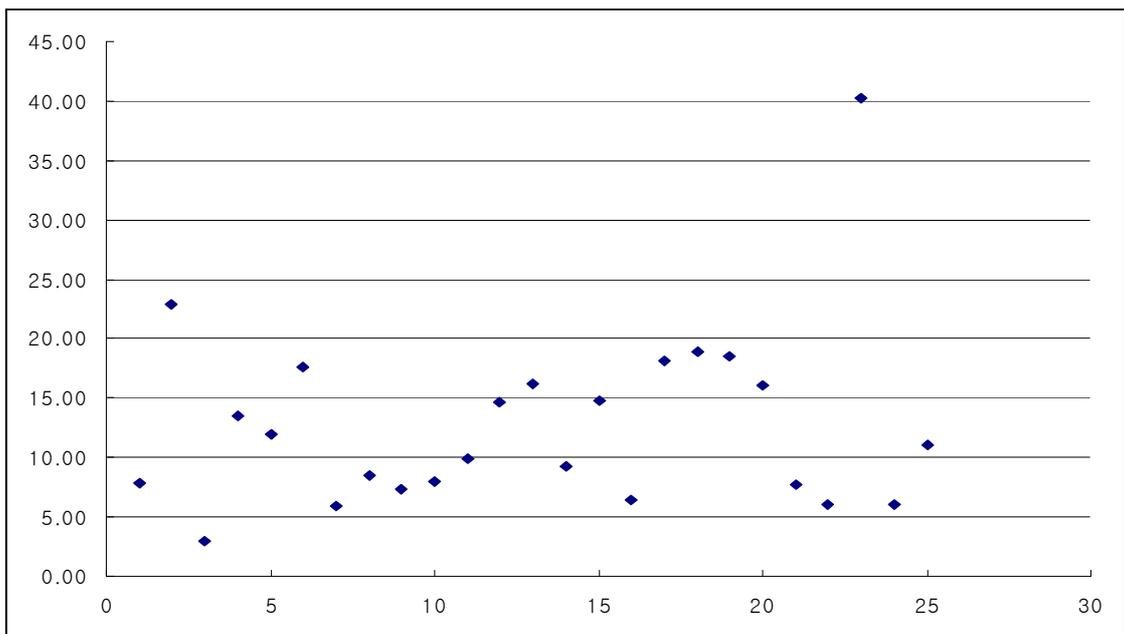
<그림 5> 자산총액 대비 사회기반시설 비율의 분포 현황



(3) 자산총액 대비 주민편의시설의 비중

- 총자산가액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의 비중은 최고 22.8%(40.2% 제외)로부터 최저 3.0%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즉, 일부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주민편의시설이 총자산가액의 5%- 20% 수준의 분포 상황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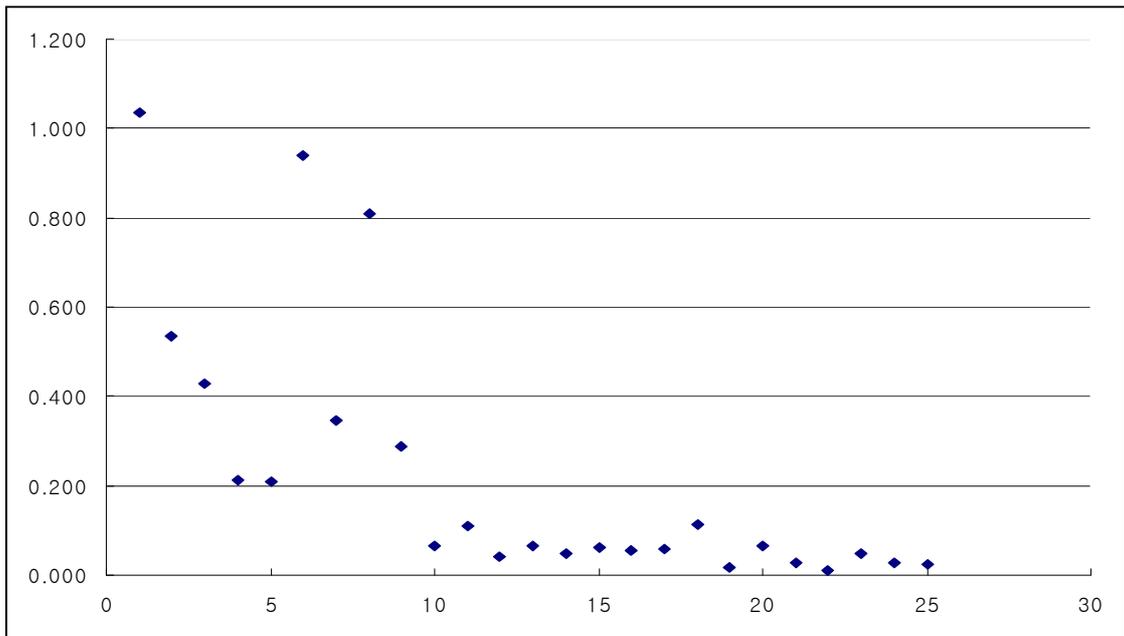
<그림 6> 자산총액 대비 주민편의시설 비율의 분포 현황



(4) 주민1인당 부채액의 분포 현황

- 주민1인당 부채액은 최고 1.034백만원에서 최저 0.011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광역시도와 시부의 경우 대체로 2백만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군과 자치구는 0.114백만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치단체 유형별로 부채의 관리상 특성이 발견되고 있음
- 1인당 부채액은 납세자인 주민의 지급부담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과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재무구조적 요소로서 중요성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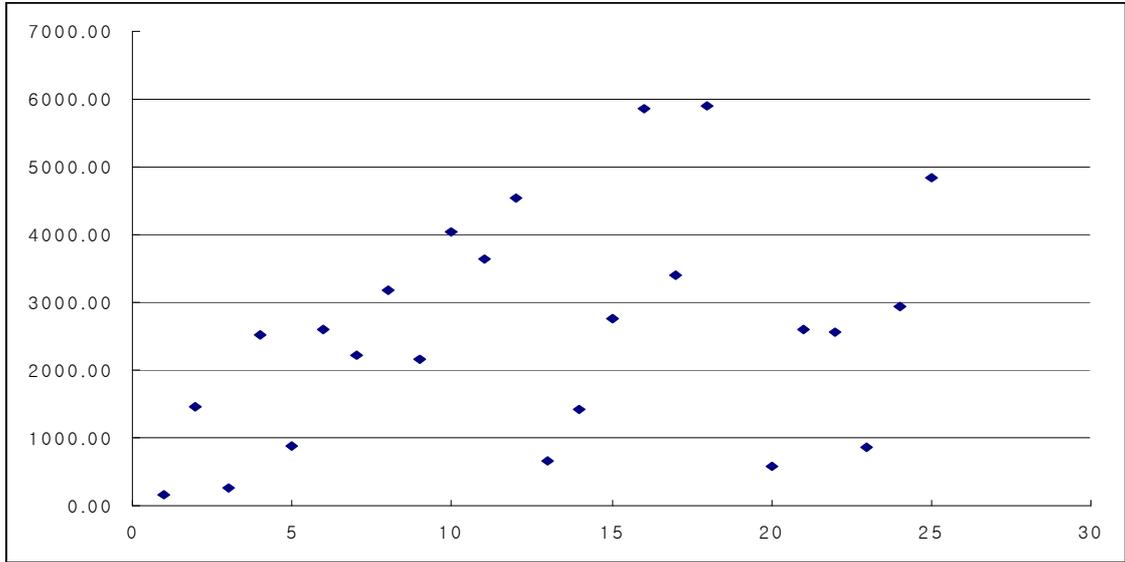
<그림 7> 주민1인당 부채액의 분포 현황



(5) 유동비율의 분포 현황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보고실체의 재무적인 유동성을 나타내고 있음
- 유동비율은 최고 5897.36%로부터 최저 168.76%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즉, 유동비율은 전체적으로 폭넓게 분포되고 있어 일정한 특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 간에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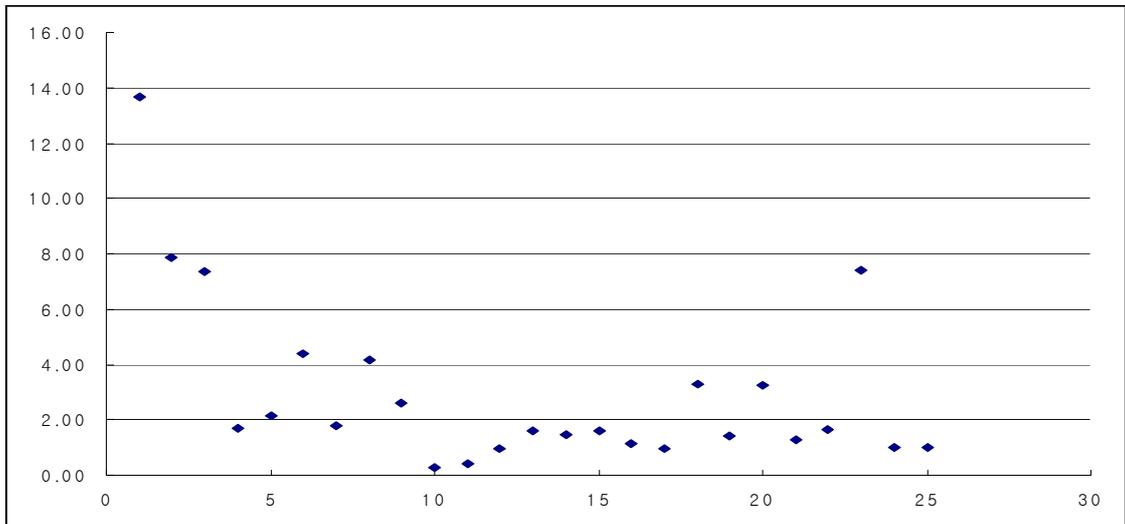
<그림 8> 유동비율의 분포 현황



(6) 부채비율의 분포 현황

- 부채비율은 재무구조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부채비율(%) = 총부채/순자산×100로 표시됨
- 부채비율은 최고 13.65%로부터 최저 0.28%의 분포를 보여 자치단체 간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광역단체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일부 특정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4%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9> 부채비율의 분포 현황



(8) 자산·부채 실사 결과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1) 국가회계의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시스템에 비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시스템은 미흡하게 관리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자산실사는 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1차 자산실사에 이어 2차 보완실사 및 자산실사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확인과정을 거쳐 기초재정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 국가회계 자산실사에서와 같이 현행 결산자료와 복식부기 결산재무제표간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공유재산, 물품, 채권 등 예산회계 결산자료와 자산실사 평가 결과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현재의 공유재산결산서, 물품결산서, 채권결산서 등 실과소의 기초자료와 공부 자료를 통해 자산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호간 대사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이 경우 현행 예산회계자료는 감가상각비 등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연계 정도와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현행 결산과 복식부기 결산이 병행되는 체계이므로 현행 공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 예산결산보고서와 자산·부채실사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자산 및 부채 유형별로 현행 예산결산자료와 복식부기 결산재무제표와의 차이 비교를 통해 결산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3) 자산의 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유형자산의 분류 문제임.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은 각 유형자산군이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이를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개별 유형자산의 기능에 따라 토지, 건물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산이 다른 과목으로 분류됨. 예컨대, 청사 부지는 일반유형자산의 토지로 분류되나, 도서관 부지는 주민편의시설의 도서관으로 분류된다. 또한 복합시설의 경우 주된 기능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므로써 재무제표상 어려움이 나타남
 - 예를 들어, 공공청사를 보건소와 같이 건설하는 경우 보건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주된 기능인 청사로 분류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보건소는 토지, 건물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복합시설의 경우 가능한 각 기능별로 면적비율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토지의 가치평가에서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설정이 요구됨

- 도로, 하천부지 등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평가방법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특히 자치단체 자산 중 도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로평가가 자치단체의 자산규모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도로평가의 경우 도로조성비는 도로·교량의 종류, 형태, 공법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평가기준 및 단가 산정이 용이하지 않음

(5) 자산실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리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요구됨

-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는 자치단체의 전부서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협조가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운용과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및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 교육 및 관련 부서간 연찬 등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산·부채 실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내부행정 관리데이터, 즉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지방채관리시스템, 예산결산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등이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이 요구됨
-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지리정보 시스템과 도로, 토지, 건물 등의 연계 문제를 들 수 있음. 복식부기회계정보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 도로명부여사업의 데이터와는 일관성을 가져야만 상호 간에 자료 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